

근저당권설정계약서

채 권 자
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위편당대부

채 무 자 최 [] []

근저당권설정자 별지목록기재와 같음

채 권 최 고 액 금일십억사천만원정(₩1,040,000,000)

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.

-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책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
-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.
-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때 또는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.
-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증축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.
-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.
-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.

2018 년 9 월 21 일

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위편당
성 명 : 사내이사 이지스
 110111 - 5766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,
 15층 1502호(대치동,금강타워)

채 무 자 최

근저당권설정자

성 명 : 별지목록기재와 같음
주 소 :

[부동산의 표시]

1. 토지

고유번호[1344-1996-018993]
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-5
임야 5432㎡

이 상

별 지

(위임인)

성명	주소	날인
나		
이		
마		
정		
권		
김		
박		
최		